

취·창업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3. 1.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5. 8. 31.
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취·창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5.8.31.>

제2조(구성) 본 대학의 취·창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·창업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8.31.>

- 1.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둔다.
- 2.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16.12.23.>
- 3.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7.1.>
4. 삭제 <2016.12.23.>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취창업 정책 수립 및 개선 <개정 2015.8.31., 2016.12.23.>
2.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원<개정 2016.12.23.>
3.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<개정 2015.8.31., 2016.12.23.>
4. 총장명의민간자격증 운영<개정 2015.8.31., 2016.12.23.>
5. 취창업 고용노동부 사업분석 및 지표관리 <신설 2016.12.23.>
6. 기타 취창업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<신설 2016.12.23.>

제5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
1.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삭제 <2013.7.1.>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취·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. <개정 2015.8.3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